

●산림청고시 제2024-18호

「산지관리법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(공익용, 임업용)산지로 지정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2024년 02월 23일

산림청장

보전산지 지정 고시

1. 관계도면 : 생략 (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,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)

가. 보전(공익용)산지

| 행정구역의 명칭 | | 도면의 명칭 | 도엽의 번호 | 구역의 표시 |
|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
| 부산광역시 | 해운대구 | 부산007 | NI52-2-27-007 | 공익용산지 |
| 부산광역시 | 해운대구 | 부산017 | NI52-2-27-017 | 공익용산지 |
| 부산광역시 | 해운대구 | 부산026 | NI52-2-27-026 | 공익용산지 |
| 부산광역시 | 해운대구 | 부산027 | NI52-2-27-027 | 공익용산지 |
| 부산광역시 | 해운대구 | 부산037 | NI52-2-27-037 | 공익용산지 |

나. 보전(임업용)산지

| 행정구역의 명칭 | | 도면의 명칭 | 도엽의 번호 | 구역의 표시 |
|--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
| 경상남도 | 김해시 | 밀양088 | NI52-2-19-088 | 임업용산지 |
| 경상남도 | 김해시 | 밀양098 | NI52-2-19-098 | 임업용산지 |

※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산지관리법」 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(<http://www.forestland.go.kr>) 및 토지이음 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
2. 열람장소

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·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부 칙

-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.